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
------	------

제출년월일 : 2017.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반영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단체명 변경(제7조 및 제11조)

- 1) 제7조 제2호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 ⇒ 『마포구체육회』
- 2) 제11조 제1항 제2호 『대한체육회』 ⇒ 『통합체육회』

나. 사용료 징수 근거 및 감면 기준 명확화(제11조)

- 1)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사용료』 ⇒ 『개인사용료』
- 2)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장애인의 보호자』
⇒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 3)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료』 ⇒ 『전용사용료』
- 4)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료』 ⇒ 『전용사용료』

다.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삭제 및 추가(제11조)

- 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규정 신설(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
- 2)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규정 삭제(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라. 불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및 범위 변경(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

- 1) 불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변경 : 1시간 1레인 ⇒ 2시간 2레인
- 2) 불링장 전용사용료의 범위 변경(최소·최대금액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주중 : 30,000 ~ 50,000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35,000 ~ 65,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바. 성미산체육관과 망원유수지 풋살장 사용료 관련 규정 신설(별표 1~4)

- 1) 사용료의 범위 대상 추가
 - 가) 성미산체육관 : 기존 구립 체육시설 중 유사한 것을 준용
 - 나) 망원유수지 풋살장 : 30,000원 ~ 80,000원(1면당 2시간 기준)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11.24. ~ 12.14.(제출된 의견 없음)
 -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개인사용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과 동반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 (창전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망원유수지 풋살장		풋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 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불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불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 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체육진흥을 위하여 <u>마포구체육회</u> 또는 <u>마포구생활체육회</u>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p>	<p>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마포구체육회</u> ----- ----- ----- -----</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사용료</u>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p> <p>가. (생략)</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1~3급 <u>장애인의</u> 보호자 1명</p> <p>다. ~ 마. (생략)</p> <p><신설></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 ----- ----- ----- -----</p> <p>1. <u>개인사용료</u>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장애인과 동반하는</u> ----- -----</p> <p>다.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u></p>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생략)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 ④ (생략)

2. 전용사용료-----

가. -----
----- 통합체육회-----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3. 전용사용료 -----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네로11길 198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신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원드길로 25 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유수지 풋살장		풋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원드길로 25 길 190 (망원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영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주중 : 30,000 ~ 50,000 토요일·공휴일 : 35,000 ~ 65,000		※ 사용료 기준 : 1시간, 1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 신 설 >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영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 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 신 설 >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 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u>그에서 관리·운영함,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u>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주요 개정 내용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사용료 감면, 전용사용료 책정 범위 등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생활체육과 이승익
연락처	02-3153-9853